

제347회 임시회
2016. 4. 27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-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
-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정하는 한편,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며,
- 교육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기와 규모를 명확히 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교육지원사업 지원근거 마련 (안 제2조, 제3조)
 - 지원대상 추가 :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충북지부
 - 지원사업 추가 :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
-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비율을 정하고, 위촉직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며, 당연직 위원회 소속기관 직위명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(안 제11조)
 - 위촉위원 비율 : 전체위원회의 3분의 1 이상
 -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 : 한 차례만 연임 가능
 - 도의 기획관리실장 → 도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
 - 교육청의 행정관리국장 → 교육청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

-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(안 제11조의2)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전출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시기와 규모를 규정 (안 제15조)
 -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2개월 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종류를 추가 반영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출규모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는 바,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으로 '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'과 교육지원사업의 종류에 '예체능' 분야를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,
 -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확보하는 규정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, 소속기관의 직위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연임제한 및 제척·기피·회피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함.
 - 안 제15조는 공립학교의 설치·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2항에 의거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, 아울러 2개월 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였음.

- 동 조례안은 충북도가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비율 명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‘부패영향평가’ 권고사항인 연임제안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,
- 또한, 시·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는 법적경비인 ‘지방교육재정교부금’을 전출함에 있어 전출 규모 및 시기를 명문화하여 교육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등 법리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규모 및 시기를 타시도의 경우에 비교해 볼 때 충북을 제외한 16개 시·도중 10개 시·도가 ‘징수세액의 90% 이상’으로, 9개 시·도가 ‘매월’ 전출하고 있는 있는데 우리도는 전출시기를 ‘2개월’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

< 참고자료 :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기 규정 현황 >

시도명	전출시기 규정내용	조례 제·개정일
계	○ 매 월 : 9개 시도 (70%이상 1, 80%이상 1, <u>90%이상 7</u> , 100% -) ○ 매분기 : 7개 시도 (70%이상 2, 80%이상 -, 90%이상 3, 100% 2)	
서울	• 매월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 • 반기별 징수세액을 정산	2012.03.15.
부산	• 매월 징수세액의 8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	2013.07.10.
대구	• 매월 징수세액의 7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	2015.04.10.
인천	• 매분기 징수세액의 70% 이상 전출 • 반기별 징수세액을 정산	2013.02.21.
광주	• 매월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	2013.02.15.
대전	• 매월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 • 반기별 징수세액을 정산	2014.03.07.
울산	• 매분기 징수세액의 7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	2015.11.05.
경기	• 매월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 • 반기별 징수세액을 정산	2015.08.03.
강원	• 매월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	2015.08.07.
충북	• 2개월마다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	개정중
충남	• 매월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	2015.10.30.
전북	• 매분기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다음달 25일까지 전출 • 반기별 징수세액을 정산	2015.07.03.
전남	• 매분기 징수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	2011.11.11.
경북	• 매분기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까지 징수세액을 분기 말일 까지 전출	2013.11.11.
경남	• 매분기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다음달 25일까지 전출 • 반기별 징수세액을 정산	2015.10.29.
제주	• 매월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 • 반기별 징수세액을 정산	2015.07.08.
세종	• 매분기 징수세액의 90% 이상을 전출 • 반기별 징수세액을 정산	2014.12.22.